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간 선 급 행 버 스 체 계 의 건 설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

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라. 과징금의 용도 (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계건설사업의 실시”를 “체계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체계건설사업”을 “체계건설사업으로 구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계건설사업”을 “간선급행버스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로 하고,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3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과징금의 용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

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중전의 제32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제33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36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삽입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운행 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 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360	540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 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30	60	120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 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80	360	540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18	30	30
나.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180	360	540
다.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 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 제1항제7호	90	180	270
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0호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30	60	120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8	30	60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1호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80	300	300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0	120	180
바.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2호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 계획을 위반한 경우		180	300	300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360	540	540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180	300	540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360	—	—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	60	60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8	30	30
사.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3호	120	240	360
아.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5호	60	—	—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6호	540	—	—
차.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7호	30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8호			
1)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	60	90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30	60	60
타.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2호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8명 이상 9명 이하		1,080	—	—

나) 5명 이상 7명 이하		720	—	—
다) 1명 이상 4명 이하		360	—	—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명 이상 19명 이하		720	—	—
나) 3명 이상 9명 이하		360	—	—
과.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 건수 ÷ 보유	법 제35조 제1항제22호 의2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대수×10)가 4 이상이 된 경우		450	—	—
2)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1건의 교통사고		180	—	—
나) 2건의 교통사고		360	—	—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3.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4.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5.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가. 사고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사고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사고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text{나. 위반지수} = \left(\frac{\text{변동 전 위반건수}}{\text{변동 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 \left(\frac{\text{변동 후 위반건수}}{\text{변동 후 보유대수}} \times 10 \right)$$

6.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가목4)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아목 및 차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8. 위반내용란의 제바목1)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 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9. 고의·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u>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u> ----- ----- ----- -----.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u>체계건설사업의 실시</u> 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 ----- ----- <u>체계건설사업</u> ----- -----.

1. · 2.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 2.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2조 제2항----- 체계건설사업으로 구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간선급행버스체계-----

-----.

④ ----- 법 제32조 제3항-----

-----.

제31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신 설>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 설>

제31조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2조의2 (생 략)

제5장 벌칙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
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과징금의 용도)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
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을 정
할 수 있다.

제34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 (현행 제32조의2와 같
음)

<삭 제>

제5장 벌칙

<u>제33조</u>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2</u> 와 같다.	<u>제36조</u>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3</u> 과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	
연 락 처	(044) 201 - 5121